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3] <개정 2022. 5. 30.>
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(제46조 관련)

1. 조사분야 및 항목

가. 매립시설

- 1) 대기: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미세먼지(PM-10) 및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
- 2) 지표수: 별표 11 제2호나목2)가)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
- 3) 지하수: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
- 4) 토양: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
- 나. 소각시설, 시멘트 소성로 및 소각열회수시설
 - 1) 대기: 다이옥신, 푸란 및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
 - 2) 지표수: 별표 11 제2호나목2)가)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(소각 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이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

2. 조사방법

가. 조사횟수: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, 악취는 여름(6월부터 8월까지)에 1회 이상, 토양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.

나. 조사지점

- 1)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 소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.
- 2) 악취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한다.
- 3) 지표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하여 폐수, 침출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·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.
- 4) 지하수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)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지하수 검사정(檢查井)으로 한다.
- 5)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,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 1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와 심토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,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.
- 다. 측정방법: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하여야 한다.
- 3. 결과보고: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

출하여야 한다.

비고: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지점 등이 제2호에 따른 조 사 시기, 조사 지점 및 측정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1호나목1)에 따른 다이옥신에 대한 1회 측정결과로 갈음할수 있다.